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0
----------	------

발의연월일 : 2016. 11. 9.

발의자 : 조정식 · 윤영일 · 황희

윤후덕 · 김정우 · 위성곤

최연혜 · 최경환^{한국} · 김해영

김영춘 · 박찬우 · 이우현

김성태 · 전혜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 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 현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사업자, 그 밖에 철도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철도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분야 공공기관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
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사업자, 그 밖에 철도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협회는 철도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분야 공공기관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